

생활 소음과 진동의 규제

「소음·진동관리법」 제20조·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dB(A), 기준: Leq)

대상 지역	소음원	아침·저녁 (05~07, 18~22시)	주간 (07~18시)	야간 (22~05시)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의 학교 중 합법원·공공도서관	주택·가옥·주택개발진흥지구·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의 학교 중 합법원·공공도서관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옥내→옥외로 나오는 소음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동일 건립)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옥외로 나오는 소음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동일 건립)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 "동일 건립" 규제: 체육시설업(철력단련장·골프연습장 등), 음악 학원·교습소, 단란주점·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등에 적용
※ 공사장: 주간 기계사용 시간이 1일 3시간 이하 +10dB, 3~6시간 +5dB 보정. 발파소음 주간 +10dB 보정. 가 지역 공휴일 -5dB 보정

○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dB(V))

대상 지역	주간 (06~22시)	심야 (22~06시)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취락지구 등,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 출처 및 원문 확인

<https://www.law.go.kr/법령/%EC%86%8C%EC%9D%8C%E3%86%8D%EC%A7%84%EB%8F%99%EA%B4%80%EB%A6%AC%EB%B2%95> — 소음·진동관리법 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EC%86%8C%EC%9D%8C%E3%86%8D%EC%A7%84%EB%8F%99%EA%B4%80%EB%A6%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 자료는 「소음·진동관리법」 등 공개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시 최신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